#### 고객지향-스피드경영-투명경영

# Samyang Optics. Co.,Ltd.

# (주) 삼양 옵틱스

http://www.syopt.co.kr

우)135-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8-24 동성빌딩 3층 Tel. (02) 784-9961 Fax. (02) 552-1411

문서번호 : 삼양OPTICS 2010-기획-003

2010. 02. 10.

담 당 : 기획부 차장 양태영

Tel.02-784-9961 Fax. 02-552-1411

수 신 : 국토해양부장관 (자동차정책과장)

참 조

(경 유)

제 목 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

- 1. 항상 국민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- 2.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-32호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」의 내용에 대하여 본사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.
- 3. 녹색성장을 위한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- 붙 임: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1부. 끝.

(주)삼양 옵틱스 대표이사

(직인생략)

#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

# 1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
#### 가. 입법예고안

의견 제출에 대한 예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#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별표1 중 주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, 차량 총중량이 1,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.

##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

제2조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6. "저속전기자동차"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 이 1.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.

#### 나. 건의안

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.

####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건의안

별표1 중 주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<u>차량중량</u>이 1,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.

####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의안

제2조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6. "저속전기자동차"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<u>차량중량</u>이 1,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.

### 2. 건의 이유

#### 가. 상위법이 정한 바에 따른 규칙의 일관성 정비

- ○금번 2010년 2월 7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(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 기준)에 따르면, 저속전기자동차를 '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 동차 중 국토해양부렁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(이하 "저속전기자동차"라 한다)'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○제35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속전기자동차는 두 가지의 차량특성, 즉 '최고 속도'와 '차량중량'을 국토해양부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6항에 따르면 "차량중량"이라 함은 '공차상 태의 자동차의 중량'을 말합니다. 같은 규칙 제2조7항에서는 "차량총중량"을 '적 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'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- ○그런데,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'차량중량'이 세부규칙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서는 '차량총중량'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, 상위법이 정한 바를 배척하게 됩니다.
- ○따라서, 금번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정의 중 '차량총중량'은 '차량중량'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#### 나. 법의 개정이유에 따른 목적 부합성 결여

- ○금번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이유 중 '전기자동차는 **대기오염개선, 차량운행을 위한 경비 절감, 미래의 성장 동력 차원에서 다양한 장점**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이 개발 및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,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 구역에서는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'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
- ○법 개정 이유인 '차량운행을 위한 경비 절감'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동차의 운행과 다양한 운행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즉, 저속의 전기자동차가 지정된 구역을 운행하는 만큼 운송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차량탑승인원, 최대적재량 등이 일반 승용차에 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그러나, 차량총중량을 1,100킬로그램으로 정하게 되면 저속전기자동차의 구조 상 배터리무게 등으로 인하여 **승차인원이 2명 정도로 제한**되고, 최대적재량도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,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**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은 극도로 제한**되고 보급은 요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

#### 다. 차량총중량 제한의 근거 결여

- ○상기 일부 개정안에서 언급된 저속전기자동차의 차량총중량 제한은 그 근거가 불투명하며, 법적 명확성과 관계성이 빈약해 보입니다. 동 규칙 어느 조항에도 저속전기자동차의 차량총중량 제한 기준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.
- ○이러한 점 때문에 저속전기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주1에 따라 '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'의 범주로 분류하되, 저속으로 운행되는 전 기자동차이므로 속도 제한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라 판단됩니다.
- 다만,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(차량총중량등)에 의하면 '①자동차의 **차량총중량은 20톤**(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,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), 축중은 10톤,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'라고 정하고 있습니다.

- 자동차의 총중량을 20톤 미만으로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, 다른 차량에는 없는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만 1,100킬로그램의 제한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.
-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중 경형인 G사의 **신형 마티즈**의 경 우 차량중량이 910킬로그램으로 5인승 기준 **차량총중량은 1,235킬로그램** 이상 이 됩니다.
- '저속전기자동차'라는 통상적인 개념은 저속으로 운행되는 전기자동차를 지칭한다고 볼 때, 별도의 차량총중량 제한사항은 그 개념을 넘어선다고 판단됩니다. 따라서 일부 개정안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'저속전기자동차' 대신에 '저속저 중량전기자동차'라 함이 옳을 것입니다.
- ○또한, 세계적 활황기를 맞이한 현재의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보급과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**저속전기자동차의 차량총중량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**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.

#### 라. 차량총중량 제한에 따른 안전장치 및 편의 장치의 강화 미비

- ○보급 활성화를 위해 저속 운행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완화한 것은 매우 긍 정적이나, 차량총중량으로 **저속전기자동차의 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안전기준과** 는 무관한 규제로 보입니다.
- ○소비자의 입장에서 더욱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**각 중 안전장치나 편의장치의 설치가 강화**되어야 하는데, 정해진 차량총중량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.

#### 라. 특정업체만의 독점적 배급 우려

○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적인 녹색성장을 유도하기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취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보급노력 과 기업 간의 협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.

- 그러나, 관련 제도나 규정이 **일부 업체의 품목에만 적합**하도록 만들어 진다면 그 보급노력이 **소비자의 외면과 국민의 불신**을 낳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.
- ○금번, 규칙의 일부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C사의 특정 2인승 저속전기차를 위한 법안이라는 항간의 소 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**차량총중량에 대한 제한사항은 수정**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.

#### 3. 건의에 대한 결론

- ○상기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, 규칙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저속전기자동차 의 정의를 '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,100 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' 대신에 '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 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'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.
- ○그러나 2010년 2월 7일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(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)에서 저속전기자동차를 '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**차량중량** 이하의 자동차'로 정의하였습니다.
- 그러므로, 관련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절충이 가능한 '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<u>차량중량</u>이 1,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구조 의 전기자동차'로 해당 규칙을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.
- ○이상 본사의 의견을 참조하시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 단히 감사하겠습니다.

# 개정안・건의안 조문대비표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	
개 정 안	건 의 안
별표1 중 주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	별표1
다.	
4.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가 매	4
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, 차	차
량 총중량이 1,100킬로그램을 초과	량중량
하지 않는 구조의 전기자동차를 말	
한다.	
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	
사동자단센기단	ाणा राध ॥४
개 정 안	건 의 안
, , , – , .	
개 정 안	건 의 안
개 정 안 제2조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	건 의 안
개 정 안 제2조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	건 의 안 제2조
개 정 안 제2조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 56. "저속전기자동차"란 최고속도가	건 의 안 제2조
개 정 안 제2조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 56. "저속전기자동차"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	건 의 안 제2조 56.